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0. 12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차원에서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삭제토록 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 중 “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” 를 “참전유공자” 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” 를
“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 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 세 이상 자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서 제외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구미시에 연속하여 ----- 이상의 참전유공자----- . 다만,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 처장이 법률 제 3조제 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 보한 자는 제외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구미시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 유공자----- . 다만,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 처장이 법률 제 3조제 2항 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.
1.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 훈처장이 법률 제 3조제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 적격자로 통보한 자	<삭 제>	<삭 제>
2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4조 제1항제4호 · 제 6호 · 제 9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 금을 받는 자	<삭 제>	<삭 제>
3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 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 당을 받는 자		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미시에”를 “구미시에 연속하여”로, “만65세 이상 자”를 “참전유공자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2만원”을 “3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